

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위탁계약서

관리자(이하 "회사"라 한다)와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(이하 "한국안기원")은 "회사"의 소속 직원에 대한 "관리감독자교육"을 "한국안기원"에 위탁하는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(이하 "본계약")을 체결한다.

제1조 【교육명】

본 계약의 교육과정명은 "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" 이라고 한다.

제2조 【목적】

본 계약은 "회사"가 소속 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"한국안기원"과 "회사"의 권리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 【교육비 입금 및 교재의 배송】

① 교육비 내용

교육기간(시간)	교육비	교육인원	총 교육비
2024. . . ~ . (30일간)	/1인	명	₩ 원
담당자 성명 / 연락처			

[입금계좌 : 국민은행 (사)한국안전교육기술원 계좌번호: 392801-04-257823]

② "회사"는 "한국안기원"에게 2024. . . 전에 교육비를 지급하고, "한국안기원"은 "회사"에게 계산서를 발행한다

③ "한국안기원"은 교육비 입금 후 "회사"가 요청하는 시점에 "회사"가 요청하는 주소지로 교재를 배송한다.

제4조 【교육방법】

① "회사"와 "한국안기원"은 관리감독자 교육 중 8시간을 우편교육으로 지정하고, "한국안기원"은 우편교육용 교재 및 평가사이트를 구축하여 "회사"에게 제공한다.

② "회사"는 "한국안기원"이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한 수강생 정보를 "한국안기원"에게 제공한다.

제5조 【계약기간 및 수수료 발급】

① 본 계약의 기간은 "회사"가 교재를 수령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하며,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"수강생"은 평가를 진행하여 합격(70 점이상)하여야 한다.

② "수강생"은 계약기간 내에 5회 까지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5회 모두 모두 불합격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③ "수강생"이 평가에 합격한 경우 "한국안기원"은 8시간 교육 수수증을 발급한다.

제6조 [신의성실 및 교육의 취소]

- ① "회사"와 "한국안기원"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한국안기원"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우편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, "회사"는 "한국안기원"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"한국안기원"은 "회사"에게 교육비 전액을 환불한다.
- ③ "회사"의 사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"한국안기원"이 교재를 배송하기 전에만 가능하다. 다만, 배송일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자 하는 경우 "회사"는 교재인쇄비 (권당 8,000원)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제7조 [비밀유지]

- ① "회사"와 "한국안기원"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당사자의 업무 내용, 영업정보 등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.
- ②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상호, 상표 및 기타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표지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8조 [분쟁해결]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,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 만일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, "한국안기원"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·날인하여 "회사"와 "한국안기원"이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월 일

"회사"		"한국안기원"	
상호		상호	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
주소		주소	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06, 2F
연락처		연락처	www.kosafe.or.kr /02-2633-5454
대표이사		대표이사	이사장 정은재 (인)

